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1410호 2022년 9월 8일(목)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1-93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

○ 속초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취소 고시 …· 3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정정) …… 4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조양동 1411-8번지 외 40필지) …… 7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1

공 고

○ 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12

○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안) …… 21

입법예고

○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23

○ 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8

○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37

○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0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고시 제2022-140호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1-93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1-93호선)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9월 8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교통 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93	10~11	국지도로	74	중1-3 중앙 468-121도	중1-10 중앙 468-121도	일반도로	1977. 4. 19. (강고 제77-72호)	폭원 확장
변경	소로	1	93	10~14	국지도로	74	중1-3 중앙 468-121도	중1-10 중앙 468-121도	일반도로	1977. 4. 19. (강고 제77-72호)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소로1-93호선	소로1-93호선	◦ 도로 확장 - 폭원: 10~11m → 10~14m	◦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일부구간 폭원확장

속초시 고시 제2022-143호

속초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취소 고시

속초시 고시 제2021-55(2021. 5. 21.)호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속초시 조양동 산41-2 일원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8일

속 초 시 장

1. 취소 사유

-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9조에 따른 주차장으로 결정하였으나,
-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만 해당되어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취소 조서

가. 교통 시설

■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4	노외주차장	주기장	조양동 산41-2도 일원	4,600	감) 4,600	0	취 소

속초시 고시 제2022-144호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정정)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고시(정정)합니다.

2022년 9월 8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43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선, 소로1-87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기개설 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소로1-23호선	B=10m, L=665m	-	B=10m, L=440m	
	소로1-87호선	B=10m, L=180m	-	B=10m, L=15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대신자산신탁(주) 대표 김철종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0. 24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시설규모	사업면적	비고
도로	소로1-23호선	B=10m, L=440m	5,345㎡ (당초) 5,425㎡ (변경)	도시계획도로 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귀속
	소로1-87호선	B=10m, L=158m	2,266㎡ (당초) 2,260㎡ (변경)	

※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분할(이동)에 따른 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소로1-23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1	장사동	431-11	임	40	-	33	33	이*옥	당초
1	장사동	431-15	임	33	-	33	33	이*옥	변경
2	〃	431-3	임	250	-	21	21	이*옥	당초
2	〃	431-13	임	21	-	21	21	이*옥	변경
3	〃	산280-1	임	2,380	19	17	36	속초시	당초
3	〃	산280-9	임	98	78	20	98	속초시	변경
4	〃	431-2	철	3	3	-	3	국(국토해양부)	당초
4	〃	431-2	철	3	3	-	3	국(국토해양부)	변경
5	〃	431-1	전	400	14	25	39	국(기획재정부)	당초
5	〃	431-12	전	39	14	25	39	국(기획재정부)	변경
6	〃	431-4	임	23	-	17	17	한*경	당초
6	〃	431-14	임	16	16	-	16	한*경	변경
7	〃	432-1	전	3,088	-	2	2	한*경	당초
7	〃	432-4	전	2	-	2	2	한*경	변경
8	〃	산280-8	철	166	97	43	140	한*경	당초
8	〃	산280-10	철	11	5	6	11	한*경	변경
9	〃	산280-11	철	152	128	24	152	한*경	변경
9	〃	437-6	철	310	145	68	213	한*경	당초
10	〃	437-32	철	215	147	68	215	한*경	변경
10	〃	437-15	대	20	20	-	20	국(기획재정부)	당초
11	〃	437-15	대	20	20	-	20	국(기획재정부)	변경
11	〃	431-5	도	2,643	2,643	-	2,643	국(국토해양부)	당초
12	〃	431-5	도	2,643	2,643	-	2,643	국(국토해양부)	변경
12	〃	437-2	철	362	-	106	106	대신자산신탁(주)	당초
13	〃	437-36	철	105	-	105	105	국(기획재정부)	변경
13	〃	437-9	철	115	-	62	62	국(기획재정부)	당초
14	〃	437-33	철	60	-	60	60	국(기획재정부)	변경
14	〃	437-16	철	16	16	-	16	국(국토해양부)	당초
15	〃	437-16	철	16	16	-	16	국(국토해양부)	변경
15	〃	437-12	철	390	-	191	191	국(기획재정부)	당초
16	〃	437-34	철	191	-	191	191	국(기획재정부)	변경
16	〃	437-24	철	785	644	8	652	국(국토교통부)	당초
17	〃	437-35	철	651	643	8	651	국(국토교통부)	변경
17	〃	437-5	철	1,520	772	312	1,084	국(국토해양부)	당초
18	〃	437-29	철	1,058	746	312	1,058	국(국토해양부)	변경
18	〃	517-37	도	872	55	-	55	국(국토해양부)	당초
19	〃	517-37	도	73	55	-	55	국(국토해양부)	변경
19	〃	산268-1	철	275	12	-	12	국(국토교통부)	당초
20	〃	산268-7	철	9	9	-	9	국(국토교통부)	변경
-	-	-	-	-	-	-	-	-	당초
21	장사동	432-3	전	255	-	16	16	국(산림청)	변경
-	-	-	-	-	-	-	-	-	당초
22	장사동	437-22	잡	11	11	-	11	국(국토해양부)	변경
계				13,658	4,440	905	5,345		당초
계				5,682	4,534	891	5,425		변경

■ 지장물조서(소로1-23호선)

일련번호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장사동	432-1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166.9	한*경	영랑동 131-2*	
2	"	산275-2	창고	콘테이너	4.3	㈜삼*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275-*	
				철재조립식	24.0	㈜삼*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275-*	
3	"	457-2	간판	철재	0.1	김*복	속초시 사진용촌길 4* (장사동)	

■ 토지조서(소로1-87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비고
					도시 계획선내	도시 계획선외	계	성 명	
1	장사동	517-37	도	872	285	12	297	국(국토해양부)	당초
1	장사동	517-37	도	73	18	-	18	국(국토해양부)	변경
2	장사동	517-60	도	276	276	-	276	국(국토해양부)	변경
2	〃	457-3	대	408	9	28	37	홍*경	당초
3	〃	457-7	대	37	9	28	37	홍*경	변경
3	〃	457-5	답	352	36	10	46	최*성 외 1인	당초
4	〃	457-8	답	46	36	10	46	홍*경 외 1인	변경
4	〃	455-3	원	1,021	676	40	716	국(기획재정부)	당초
5	〃	455-12	원	715	675	40	715	국(기획재정부)	변경
5	〃	산313-1	유	887,397	50	-	50	국(국토해양부)	당초
6	〃	산313-24	유	50	50	-	50	국(국토해양부)	변경
6	〃	429-16	임	54	22	-	22	국(국토해양부)	당초
7	〃	429-23	임	21	21	-	21	국(국토해양부)	변경
7	〃	453-4	원	3,176	12	-	12	주식회사신세계 영랑호리조트	당초
8	〃	453-14	원	12	12	-	12	주식회사신세계 영랑호리조트	변경
8	〃	산268-1	철	275	41	11	52	국(국토교통부)	당초
9	〃	산268-8	철	13	13	-	13	국(국토교통부)	변경
10	〃	산268-13	철	2	-	2	2	국(국토교통부)	변경
9	〃	산268-2	임	7,644	520	218	738	정*성	당초
11	〃	산268-15	임	761	537	224	761	정*성	변경
10	〃	산268-4	임	496	75	15	90	안*수	당초
12	〃	산268-16	임	97	82	15	97	안*수	변경
11	〃	456	전	754	188	18	206	안*수	당초
13	〃	456-1	전	212	194	18	212	안*수	변경
계				899,911	1,914	352	2,266		당초
계				2,315	1,923	337	2,260		변경

■ 지장물조서(소로1-87호선)

일련번호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장사동	산268-2	창고	목재	5.8	정*성	광진구 구의동 631-*	

⊙**속초시 고시 제2022 - 14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속 초 시 장

1. 사업명칭 : 속초시 조양동 141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 ㈜설악디앤씨 대표 홍순용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213, 305호(동명동)
3.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11-8번지 외 40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분양주택	○ 대지면적 : 6,572㎡ ○ 건축면적 : 4,690.79㎡ ○ 연 면 적 : 78,989.1398㎡ ○ 주 용 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층 수 : 지하4층 / 지상37~43층 ○ 세 대 수 : 공동주택 370세대, 오피스텔 64실	239,024,618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23. 6. 30. ~ 2027. 06. 30.(예정)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7.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과(☎033-639-277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합니다.

[붙임1.]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8	조양10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조양동 1411-8번지 일원	-	증) 7,202	7,202	-

1.1.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48	속초시 조양동 1411-8번지 일원	7,202	▫ 도시 기능·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시설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2.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1.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없음)

구 분	구역내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202	-	7,202	100.00	-
일반상업지역	7,202	-	7,202	100.00	-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1. 도로

3.2.1. 도로총괄표

▮ 기정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3	617	5,502	1	310	3,190	1	200	1,670	1	107	642
소로	3	617	5,502	1	310	3,190	1	200	1,670	1	107	642

▮ 변경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3	617 (532)	6,091 (630)	1	307	3,149	1	200 (115)	1,852 (182)	1	110 (110)	1,090 (448)
소로	3	617 (532)	6,091 (630)	1	307	3,149	1	200 (115)	1,852 (182)	1	110 (110)	1,090 (448)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3.2.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6	10 ~ 12	국지 도로	310 (310)	청호동 444-22	청호동 444-28	일반 도로		1977.4.19 (강고 제77-72호)	
변경	소로	1	16	10 ~ 12	국지 도로	307 (307)	청호동 444-22	청호동 444-2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98	8	국지 도로	200 (115)	조양동 1410-13	조양동 1416-2	일반 도로		1977.4.19 (강고 제77-72호)	
변경	소로	2	98	8 ~ 10	국지 도로	200 (115)	조양동 1410-13	조양동 1416-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40	6	국지 도로	107 (107)	조양동 1410-13	조양동 1411-9	일반 도로		1977. 4. 19 (강고 제77-72호)	
변경	소로	3	140	6 ~ 11	국지 도로	110 (110)	조양동 1410-13	청호동 444-28	일반 도로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3.2.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6	소로 1-16	◦ 연장변경 (310m → 307m)	◦ 주상복합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연장 변경
소로 2-98	소로 2-98	◦ 폭원변경 (8m → 8~10m)	◦ 주상복합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소로 3-140	소로 3-140	◦ 연장변경 (107m → 110m)	◦ 주상복합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연장 변경
		◦ 폭원변경 (6m → 6~11m)	◦ 주상복합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4.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1.1.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신설	BL1	A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11-8번지 일원	6,572	주상복합
		B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10-8번지 일원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11-7번지 일원	630	공공시설
합 계				7,202	

※ 공공시설의 경우 당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개설하여 기부채납 예정임.

4.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2.1.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결정내용
A	조양동 1411-8 번지 일원	허용용도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 이	◦43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도면참조
		색 채	◦도면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

5. 기타사항에 관한 부문

5.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조양동 1411-8 번지 일원	단지내 조경	◦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 결정도에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속초시고시 제2022-14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속초시 고시 제2017-73호(2017. 9. 8.)호 및 속초시 고시 제2021-17호(2021. 2. 26.)호와 관련되어 속초시 노학동 63번지 일원에 대하여 지정되었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8일

속 초 시 장

1. 해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 만료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사항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소야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속초시 노학동 63번지 일원	719,996	감)719,996	0	해제

3. 관련도서 비치(관계도면 : 실음생략)

○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전화 : 033-639-24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속초시 공고 제2022 - 852호

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실업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9. 7.

속 초 시 장

1. 모집개요

○ 사업기간: 2022. 10. 4. ~ 12. 31.(3개월)

○ 신청자 접수

– 접수기간: 2022. 9. 13.(화) ~ 9. 16.(금) 4일간

– 접수장소: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별관 1층) 방문접수

○ 제출서류: 본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기타 증빙서류 등

○ 자격요건: 관내거주 만 18세 ~ 만 64세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

※ 1957. 10. 5. ~ 2004. 10. 4. 사이 출생자

○ 모집인원: 113명

※ 사업기간(시간) 및 모집인원 등은 예산사항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별 모집인원 초과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희망한 부서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정부의 직접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라 선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선발통보: 9. 27.(화) 14:00 이후 선발자에 한해 개별 문자발송

2. 근무여건

○ 근무시간: 주 30시간(6시간×5일)

○ 임금단가 및 근로조건

– 임금단가: 1일 54,960원(시급 9,160원×6시간)

– 간 식 비: 1일 5,000원(근로일만 지급)

※ 4대보험 가입(본인부담금 공제), 주휴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3. 신청시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접수처에 비치**

○ 기타 가점대상,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4. 사업참여 배제

①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③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④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⑤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⑥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⑦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1~'22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⑧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관련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대상자

⑪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5. 기타사항

○ 각종 복지급여 수급권자는 해당사업 참여로 인한 소득 증가로, 수급 자격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참여 신청서상 취업 취약계층 여부 및 선발기준 점수표상 가점항목 등의 증빙서류는 추가 제출 필요

※ 문의: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 033-639-2353)

붙임 1. 사업장별 모집인원

2. 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앞·뒷면)

3. 선발기준 점수표(예시)

[붙임1]

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모집인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12명)

사업 세부내용	부서명	근로인원	비고
합 계		**12**	
관내 꽃식재 및 꽃묘장 관리	공원녹지과	4	
초화류 식재 및 시설물 관리 등		4	
도시공원 제초 및 환경정비 등		4	

❖ 행복일자리사업(101명)

사업 세부내용	부서명	근로인원	비고
합 계		**101**	
속초해변 환경정비 등	관광과		
바다향기로 화장실 환경정비 등		1	
설악동 공중화장실 방역 및 환경정비 등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및 방역관리 등 (속초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과	1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및 방역관리 등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2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및 방역관리 등 (공설운동장)		1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및 방역관리 등 (청초생활체육관)		1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및 방역관리 등 (척산생활체육관)		1	
민원접수 및 안내 등		1	
근로자종합복지관 환경정비	일자리경제과	1	
속초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홍보 등		1	
전통시장 환경정비 및 방역관리 등		2	
청년몰 환경정비 및 방역관리 등		1	

사업 세부내용	부서명	근로인원	비고
속초한우리공동체 조리도우미	복지정책과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리도우미		1	
한국뇌병변인권협회 환경정비 및 조리도우미		1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조리도우미		1	
강원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조리도우미		1	
강원도 시각장애인연합회 환경정비, 행정지원업무, 조리도우미 등		1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리도우미		1	
속초장애인복지센터 조리도우미		1	
금강장애인복지센터 조리도우미		1	
추모공원 환경정비 및 방역관리 등	가족지원과	1	
		1	
		1	
폐가전 및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업무지원 등		2	
		2	
속초시 내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철거	건축과		
항포구 및 바닷가 쓰레기 수거 등			
반려견놀이터 주변 환경정비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환경정비	보건소 (보건정책과)	1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상담 및 독감 접종 대상자 안내 등	보건소 (건강증진과)		
선별진료소 검사안내, 접수 및 환경정리 등			
청사 내외 환경정비			
청사 내외 및 하수처리장 주변 환경정비			
박물관 및 노리숲길 환경정비 등			
폐스티로폼 합성수지 원료생산	환경자원사업소	20	
관내 환경정비 등	영랑동	3	
관내 환경정비 등	동명동		
관내 환경정비 등	금호동	3	
관내 환경정비 등	교동		
관내 환경정비 등	노학동		
관내 환경정비 등	조양동	5	
관내 환경정비 등	청호동	3	
		3	

[붙임2]

(앞면)

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2022. 9.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없을 시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 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노숙인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2020. 2. 23. 이후)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일용직, 주부,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20 .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1 본 신청서는 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u>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u>이 있을 수 있음

2022년 9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참여자 선정종료시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 년 9 월 일

속초시장 귀하

[붙임3]

(앞면)

선발기준 점수표(예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득점	비고
합계		120		
우선선발 제한 대상 여부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또는 중복참여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의 우선선발 제한" 참고
저소득층 여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0		•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여부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0		
세대주 여부	여성세대주, 일반세대주	10(10,0)		
세대원수 (세대주·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10,5,0)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5		• 해당 법률규정: 뒷면참조
장애인	여, 부	10(10,0)		
한부모가족	여, 부	10(5,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	5(5,0)		
결혼이주여성	여, 부	10(5,0)		
실직자 (공고·접수일 현재)	여, 부	15 (15,0)		• 증빙서류 제출
휴·폐업자 (공고·접수일 현재)				• 휴·폐업증명서 제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이전 3개월간 해당업무 종사했음을 증빙
기타 지방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해당지역 거주기간, 연령 등)	30~0		•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50점				
우선선발 제한 대상	반복참여자에 해당	△30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해당	△3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근무태만 등	△20~0		•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뒷면)

〈 참고사항 〉

①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③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기준 조정 가능

속초시 공고 제2022 - 861호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속 초 시 장

1.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개요

가. 시간적 범위 : 2011년 ~ 2019년

나. 공간적 범위

1)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B·C지구)

2) 면 적 : 특정지역 고시 1,114,398㎡

- 1단계 : 310,259㎡(B지구 : 145,493㎡ / C지구 164,766㎡)

- 2단계 : 804,139㎡(D지구 포함)

다. 사업내용 : 설악동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 등

라. 해제사유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현재까지 미추진

- 진행 중인 설악동 재건사업에 대한 관련근거(「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상이

- 설악동 재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존 행정계획 폐지

2. 주민공람 계획

가. 열람기간 : 2022. 9. 7. ~ 28. (14일간, 국공휴일 등 제외)

나. 열람장소 : 속초시청 관광과 설악동개발팀 사무실

다.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

- 관계서류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속초시 관광과에 우편이나 직접 제출 또는 공청회 당일 현장에 배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폐회 후 제출

※ 의견서식 : 속초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붙임 서식 참조

3.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

가. 일　　시 : 2022. 9. 22.(목) 14:00 ~ 15:00

나. 장　　소 : 관광과 설악동개발팀 2층 회의실

다. 참여방법 : 현장 참여

4. 기타사항

- 기타 공청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관광과 설악동개발팀(☎033-639-20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공고 제2022-863호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건축물 해체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2022. 8. 4. 시행) 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3조)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지정(안 제4조)

다.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점검 실시(안 제5조)

라.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자문에 따른

점검 실시(안 제6조)

마. 안전진단의 실시 대상에 구조안전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안 제7조)

바.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에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과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포함(안 제8조)

사.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에

-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시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포함(안 제9조)

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대상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내용 추가(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odari7@korea.kr

2)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축과

3) 팩스 : 033-639-231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축과(전화 : 033-639-2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속초시 건축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 건축위원회(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

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절차 및 방법)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면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감정평가법 제49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고 제2022-864호

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속초시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3조)

나. 지원대상의 범위(안 제4조)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의 속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
- 임차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다. 지원제외 대상(안 제5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라.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안 제6조)

-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 최대 3년 지원

마. 신청 및 지원절차, 환수조치 등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8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odari7@korea.kr

2)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축과

3) 팩스 : 033-639-231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축과(전화 : 033-639-2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2. 신청일 현재 부부가 속초시 관내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3.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

4. 속초시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5.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LH매입임대주택 ·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전세자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2.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혼부부 중 1명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③ 시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④ 신청기간 및 지급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지원 자격이 상실되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는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 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배 우 자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속초시 거주기간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주택소유 여부 (√ 체크)	□ 무주택
	자 녀	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	소 재 지		소 유 자	
	임차금액(원)		임차면적(㎡)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신청금액	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1. 혼인기간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주택전세 자금대출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4. 대상주택 전세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성 별 : □남 □여
주 소 :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번호	신청인						전입일자	신청일자	입금계좌	
	성 명	생년월일	성별(남.여)	관계	주 소	연락처			성 명	계좌번호(은행명)

[별지 제4호 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호	신청인						지급금액	신청일	지급일	지급계좌			환수일/사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남.여)	관계	주소	연락처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속초시 공고 제2022-865호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국민주택 건설·공급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주택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1979년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여 왔으나, 현재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odari7@korea.kr

2)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축과(건축행정팀)
3) 팩스 : 033-639-231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축과(전화 : 033-639-2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고 제2022-866호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법령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반영(안 제9조의2)

○ 기타 법률 용어 띄어쓰기 정비

○ 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의거, 별표 1 중 품종구분 기준의 소모품란 제4호 단가 현실화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28.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회계과 계약관리팀

— 연락처 : 전화(033-639-2174), 팩스(033-639-2396),
전자문서(dustjf76@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회계과 계약관리팀(033-639-21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결산 종료 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품종구분 기준의 소모품 제4호 중 “3만원 이하”를 “50만원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결산 종료 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